

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0. 9. 15.(수) 10:2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이경자 부위원장
송도균 위 원
형태근 위 원
양문석 위 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가. 성원보고
 - 나. 국민의례
 - 다. 개회선언
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(주)CJ오쇼핑의 법인분할에 관한 건 - (2010-55-231)

○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방송법」 제15조제1항에 의거, (주)CJ오쇼핑의 변경(법인분할)승인 신청 건과 「방송법」 제15조의2에 의거, (주)온미디어 계열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해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함.

○ 주요 내용

① (주)CJ오쇼핑의 법인분할에 대한 변경승인 내용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
		분할법인(존속법인)	신설법인
회사명	(주)CJ오쇼핑	(주)CJ오쇼핑	(주)온미디어홀딩스
자본금 (분할비율)	551억원 (100%)	303억원 (55%)	248억원 (45%)

② (주)온미디어 계열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내용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
(주)한국케이블티브이전남동부방송	(주)CJ오쇼핑	(주)온미디어홀딩스
(주)한국케이블티브이영동방송		
(주)수성케이블방송		
(주)동구케이블방송		

2) 2011년도 공익채널선정 기본계획(안)에 관한 건 - (2010-55-232)

○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추가 검토후 재상정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함.

3) 「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」(고시) 제정안에 관한 건 - (2010-55-233)

○ 최재유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제34차 위원회(10. 6. 10) 보고후 입법 예고 및 규제심사 과정 등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「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」(고시)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.

○ 주요 내용

- ① 요금고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고지사항*을 정함 (안 제2조 및 별표)
 - * 필수고지사항 : ①이용자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 ②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
- ② 요금고지서에 필수고지사항을 서비스 유형별로 충분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와 평균적인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항목별로 구분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로 규정 (안 제3조)
- ③ 고시 위반시 사업자에 대한 법정 '시정명령' 부과 전에 '시정권고'를 통한 자율적 시정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 신설 (안 제5조, 관련 사업자 의견 반영 내용)
- ④ 규제대상 서비스 가운데 법적 위임 근거가 불명확한 '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' 삭제 (규제개혁위원회 의견 반영 내용)

4) 010 번호통합 정책방안에 관한 건 - (2010-55-234)

-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그동안의 번호정책과 변화된 정책여건, 공청회 결과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「010 번호통합 정책방안에 관한 건」을 '한시적 번호이동 허용 방안'(제3안)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함.

※ 수정 내용

수정전	수정후
KT 외 사업자가 2G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01X 이용자의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추후 결정·시행	차기에 2G를 종료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한 한시적 번호이동 허용기간 추가

○ 주요 내용

① 번호통합 정책방안 개요

- ① 010 번호통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 번호통합은 '최종적으로 2G서비스를 종료하는 시점(2018년 예상)'에 완료함
- ② 아울러, 2011년 1월 1일부터 01X이용자로 하여금 3G 전환 시 「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」과 「01X번호 표시서비스」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

② 세부시행 방안

【 01X 이용자의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 시행계획 】

① 개요

- 2G서비스 종료로 인한 01X이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01X 이용자의 3G로의 이동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,

·3G에서의 01X번호 사용기간 이내에 반드시 010 번호로 변경토록 함

② 세부내용

- **(시행원칙)** 이용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,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가 동시에 시행토록 하되,

·사업자간 마케팅 경쟁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자사 2G에서 3G로의 번호이동을 허용

※ 시행일 전까지 번호이동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

- **(사업자별 한시적 번호이동 기간)**

·KT의 2G 종료를 기준으로 한시적 번호이동 허용

▶기간 : 3년(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허용)

▶대상 : SKT, KT, LGU+

·차기에 2G를 종료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한시적 번호이동 허용

▶기간 : 2년(차기 2G 종료가 결정되는 시점에 시행)

▶대상 : SKT, LGU+

- **(이용조건)** 2G에서 3G로 번호이동한 01X 이용자는 재이동(3G→3G, 3G→2G) 할 수 없도록 하며, 이용기간 종료 전에는 010번호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사전동의를 얻도록 함

- **(사업자 의무)** 이용자에 대한 번호이동 조건의 고지, 한시적 기간 경과후 변경될 010번호를 미리 부여하여야 하며, 010번호로의 변경과 원활한 통화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

【 01X번호 표시서비스 시행계획】

① 개요

- 01X이용자가 010으로 번호를 변경한 후에도 전화걸 때 상대방에게 변경 전 01X번호를 표시해 주는 서비스



·01X번호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며, 무료로 제공

② 세부내용

- (시행 시기)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, 각 사업자별로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는 다소 늦출 수 있도록 함
- (01X번호 표시 범위) 음성 및 문자서비스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공
·기타 부가서비스에 대한 01X번호 표시여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
- (이용 기간) 01X 이용자는 010으로 변경한 시점부터 3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, 2G종료(2018년경)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음
- (서비스 이용의 제한) 2G 서비스 이용 중 타사업자의 3G 서비스로 전환(신규 가입 포함)하는 경우에는 한시적 번호이동 정책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01X 번호 표시서비스의 이용을 제한
- (사업자의 의무) 서비스 이용조건 고지, 01X번호의 회수, 01X번호 표시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중에는 변경된 010번호 안내를 하여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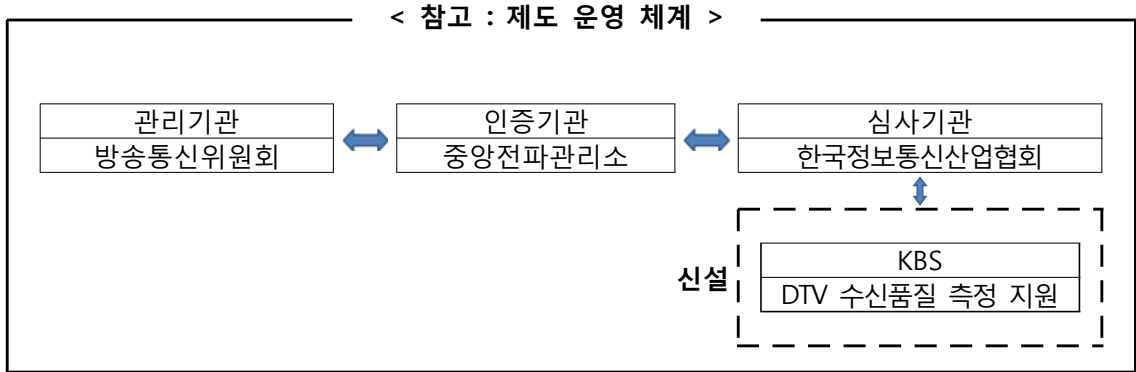
5) 「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0-55-235)

- o 황철중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인터넷 설비에 한정하여 적용하던 동 지침을 디지털 방송 수신설비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「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」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.
- o 주요 내용
 - 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“특등급” 건축물(광케이블 배선 건물)을 대상으로 디지털 방송 수신품질 등 추가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, “초고속정보통신건물(특등급)”로 인증
- 기존 “특등급” 건축물에서 DTV 수신 설비를 추가 설치 시 재인증
 - ② DTV 수신 양호와 발급기관 등을 표시하여 “특등급” 인증 엠블럼 개정

변경전	변경후
	

③ 인증제도 심사체계 개선

- KBS가 DTV 수신품질 측정 지원 및 방송 수신환경 개선작업을 병행하도록 함



사. 보고사항

1) 차세대인터넷주소(IPv6) 전환 추진계획(안)에 관한 사항

○ 현 인터넷주소(IPv4) 할당 종료시점이 가시화됨에 따라, 차세대 인터넷서비스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마련된 「차세대인터넷주소(IPv6) 전환 추진계획(안)」을 황철중 네트워크 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.

○ 주요 내용

① IPv6 전환 상용서비스 지원기반 구축

- IPv6 기반 상용 웹서비스(DNS, 메일), IPTV 서비스(IPTV기반 웹접속, 게임몰 등), 3G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추진하여 이용자 확대 및 관련 장비시장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 확립

·금년 중 분야별 시범사업을 완료하고, '11년부터 본격적 상용화 추진

- IPv4 신규할당 종료에 따른 IP 주소 할당 우선순위 수립

·인터넷서비스별 중요도, 운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IPv6전환 추진

▶가입자 증가가 감소하는 전화선기반 데이터통신망, 전력제어통신 등 안정성이 요구되는 국가 주요통신망은 당분간 IPv4 유지

▶스마트모바일 등 신규 IP수요가 많은 서비스는 IPv4/IPv6를 혼용

▶새로 구축되는 LTE* 등 차세대 이동통신망은 초기부터 IPv6 체계로 구축

* LTE(Long Term Evolution) : 3세대 이동통신(3G)을 장기적으로 진화시킨 기술로 3G와 4G의 중간에 해당하는 기술

② IPv6 전환 인식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

- **(IPv4 할당종료시점(Flag Month) 선포)** 국내 IPv4 신규할당 중지 시점을 '11. 6월로 선포'하고 IPv6 전환 서비스 분야별 대응 시나리오 마련
 - 국제 인터넷주소(IP) 할당기관인 ICANN의 IPv4 신규할당 종료시점('11. 6월)이후에는 우리나라도 정상적인 IPv4 할당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'11. 6월을 IPv4 할당 종료 시점인 Flag Month로 선포
- **(IPv6 전환 취약계층 등 지원체계 강화)** IPv6 전환 취약계층(중소ISP, 콘텐츠사업자 등) 대상 기술컨설팅, 테스트 지원 등 종합지원체계 강화
 - (IPv6 전환 전문인력 양성)** IPv6 도입을 위한 수요자의 수준별(기초실무, 네트 워크관리, IPv6 적용 등) 기술교육 실시('13년까지 약 2,400명)

③ IPv6 추진체계 및 점검 강화

- IPv6 전환 추진체계 강화 : 'IPv6 전환추진협의회' 확대 개편
 - 그간 ISP 백본망 위주의 IPv6 전환 준비율 제고를 위해 정부와 ISP 중심으로 "IPv6 전환추진협의회"를 구성하여 운용해 왔으나
 - ▶인터넷서비스 전주기(全週期 : 네트워크-응용서비스)에 IPv6를 적용하기 위해 포털, 장비제조사, CATV사업자, 보안업체 등을 참여시켜 IPv6 전환 확산, 홍보 등을 강화
- 분야별 목표 설정 및 점검체계 강화
 - IPv6 전환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ISP, 서비스제공자(포털, 전자상거래), 비즈니스이용자(민간·공공기관), 제조사(HW·SW) 등 분야별로 IPv6 목표치 설정 및 점검관리
 - ISP의 경우 IPv6 전환을 '13년까지 백본망 100%, 가입자망 45%까지 전환하고, IPv6기반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활성화 및 6NGIX* 연동을 강화
 - * 6NGIX(IPv6 Next Generation Internet eXchange) : 국내외 ISP의 IPv6 트래픽 교환기
- 인터넷서비스 제공자, 비즈니스 이용기관 관련
 -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포털, 온라인쇼핑몰 등 주요 100대 웹사이트 (일 평균 방문자 기준)에 IPv6 적용을 유도하여 타 사이트 파급효과 극대화
 - 공공부문 IPv6 도입 강화를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, 주요 공공기관 IPv6 전환 준비율 제고
 - ※ 금년중 정부통합전산센터내 설비에 대한 IPv6 전환수요 조사 및 전환대책 수립

- 국내 네트워크장비 제조사는 '13년까지 100% IPv6를 장비에 적용토록 추진하고, IPv6 네트워크 설계에 필수적인 장비들을 IPv6 시험인증 획득 유도

2)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o 주파수 경매제 도입 등을 위한 전파법이 개정('10. 7. 23 공포, '11. 1. 24 시행)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「전파법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을 오남석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음

o 주요 내용

① 주파수 경매시 최저경쟁가격 설정 등(안 제14조, 제14조의2)

- 낙찰가격의 하한을 의미하는 최저경쟁가격은 주파수 대역 특성, 동일(유사) 용도의 주파수의 할당대가, 주파수 이용권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
- 경매가 아닌 기존 방식으로 대가할당하는 경우 동일(유사) 용도의 주파수 경매대가 등을 고려하여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

② 주파수 할당대가의 기금 배분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의3)

- 주파수 할당대가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대한 배분비율은 양 기금의 재정수지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 및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도록 함

③ 표본검사 대상·비율 및 전수검사 기준 마련(안 제42조의2)

-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전파 혼·간섭 우려가 적은 광중계기지국에 대해 표본 검사를 적용
- 표본비율은 검사대상 무선국의 30%로 하며, 불합격율이 표본의 15%를 초과할 경우 전수검사 실시

④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대상(안 제77조의2, 제77조의3)

- 기자재 유형에 따른 인증제도[형식승인(유선), 형식검정·등록(무선), 전자파적합등록(정보기기)]를 위해 정도에 따른 적합성평가제도(적합인증·적합등록)로 통합함에 따라 적합인증·등록대상의 기준 마련

⑤ 개설 신고제로 전환되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(DMB)(안 제21조)

- 전파 혼·간섭 우려가 없는 위성DMB보조국 및 지하·터널내에 설치하는 지상파 DMB보조국의 경우 허가없이 신고로 개설하도록 전환

⑥ 무선국의 정기검사 주기 단축(안 제44조)

- 홍수 예·경보, 조난구조, 소방용 무선국 등 인명안전 및 재난 관련 무선국의 성능 유지를 위해 정기검사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

※ 인명안전 관련 무선국 중 의무항공기국과 의무선박국의 정기검사 주기만 1년이고 나머지는 일반 무선국과 같이 5년이므로 무선국의 성능유지를 위해 검사기간을 단축

⑦ 소출력 방송국에 대한 명칭, 출력 및 허가 유효기간 정비(안 제36조, 제57조)

- 소규모 지역밀착형 비영리 방송국인 소출력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상의 명칭, 출력 및 허가 유효기간을 방송법과 동일하게 정비

·명칭을 소출력방송국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으로, 출력을 1W이하에서 10W이하로, 허가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

⑧ 환경친화적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근거 마련(안 별표 8, 9, 10)

- 환경친화 무선국 설치명령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환경친화 무선국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근거 마련

※ 전체무선국 중 환경친화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1~10% 감면

⑨ 위성휴대통신(GM-PCS) 전파사용료의 가입자 단가 신설(안 별표 8)

- 현재 위성휴대통신은 일반 무선국 기준으로 전파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, 가입자 기반의 다른 기간통신역무와 같이 가입자 수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선

·서비스 성격 및 현행 전파사용료 부과수준을 고려하여 가입자 단가 신설 (음성·데이터 겸용 500원, 데이터 전용 80원)

⑩ 행정제재처분 합리화(별표 23 내지 28)

- 과태료 부과, 무선국 운영정지 처분 등 행정제재처분시 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분 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해 위반행위가 재차, 삼차 반복되는 경우의 제재기준을 마련함

※ 법제처('08.10월) 및 방통위 규개특위('09.12월) 권고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

-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시 위반 무선국 수의 범위(1~5, 6~10, 11국 이상)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던 과태료 금액을 위반 무선국 1국당 과태료 부과 금액으로 개선

⑪ 기타(안 제77조의4 내지 14, 제88조 등)

- 그 밖에 적합성평가 변경·면제 절차, 시험기관 지정절차 등 마련,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사업내용에 인력양성 사업 등 추가, 개정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허가/신고 규정체계 정비에 따른 조문 정비 등

아. 기 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0. 9. 17(금),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.

6. 폐 회 (18:30)

※ 12:25 정회, 17:50 속개